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6. 6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6월 2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제4차 사회건설위원회(2016. 6. 21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국장 박춘은)

가. 제안이유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과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변경된 법조항을 수정하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주민으로 변경  
(안 제명, 제1조, 제2조제1호, 제3조)
- 저소득주민의 정의(안 제2조제1호)
- 지원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 
(안 제6조제2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태선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과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의 개정으로 맞춤형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
  -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주민으로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고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자로 규정함.
  -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시기를 지원 실시로 변경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토록 신설함.
-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료 지급방법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47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부칙 개정(2011.12.31)에 따라 관련 근거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,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일부 개정대상 조례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### 나. 주요 개정사항

- 관련 용어 정비(제1조~제5조, 제8조 개정)
  - “차상위계층” → “저소득주민”
  - “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자” → “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자”
  -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” →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” 등
- 지원 실시(제6조 2항 신설)
  - ②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는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부칙 제21조제12항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: 심사실시(대상사무 없음)
- 2) 부패영향평가: 평가실시(원안동의)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평가실시(원안동의)

라. 기타

- 1) 입법예고(2016.4.28.~5.18., 20일간) 결과: 의견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차상위계층인 자에게”를 “저소득주민에게”로, “및 장기요양보험료(이하 “보험료”라 한다)”를 “및 장기요양보험료”로, “복지향상에 기여함을”을 “복지향상 도모를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차상위계층”을 “저소득주민”으로, “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자”를 “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보험료”를 “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(이하 “보험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”를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차상위계층 주민”을 “저소득주민”으로 하고, 제4조의 제목 “(급여대상자 선정)”을 “(대상자 선정)”으로 하며, 제4조 중 “영등포지사장”을 “영등포지사장(이하 “지사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급여대상자”를 “대상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급여대상자”를 “대상자”로 하며,

제6조의 제목 “(지원시기)”를 “(지원 실시)”로 하고, 제6조를 1항으로 하며,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는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”를 “그 지원금액의 전액을 환수한다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보험료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2,000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.

1~5 (생략)

제4조(급여대상자 선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선정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.

제5조(조사실시)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, 재산상황,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6조(지원시기)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,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.

-----.

제3조(지원대상) -----

저소득주민 -----

1~5(현행과 같음)

제4조(대상자 선정) -----

---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장  
(이하 “지사장”이라 한다) -----

-----대상자를

제5조(조사실시)① -----

-----대상자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지원 실시) ①-----

〈신 설〉

제8조(환수 등)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②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는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.

제8조(환수 등) -----  
-----  
-----  
그 지원금액의 전액을 환수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